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지역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의기구가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지역협의회)의 구성 및 운영)</u>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② 지역협의회는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③ 지역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의기구가 지역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